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5
----------	-----

제출년월일 : 2000. 11. 1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제4차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채무보증신청에 의거 기 채무보증 승인 후에는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 누구에게나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1항)
- 주채무의 내용 변경시에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간소화를 위하여 내용 변경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 함. (안 제5조)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채권자는”을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으로 한다.

제5조중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가름한다.”로 하며,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채무액이 당초 승인액 보다 10% 이내로 증가하거나 감액되는 경우
2. 금융기관 이자율이 증가되거나 하락되는 경우
3.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연장되거나 단축되는 경우
4. 상환기간의 변동없이 계획의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회 계 과 ☎ 940-4311
입 안 자	회 계 과 장	박 세 영
	경 리 담 당	이 기 영
	담 당 자	황 태 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 ----- ----- ----- ----- ----- ----- ----- ----- ②~④ (현행과 같음)
②~④ (생략)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신설)	1. 채무액이 당초 승인액 보다 10%이내로 증가하거나 감액되는 경우 2. 금융기관 이자율이 증가되거나 하락되는 경우 3.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연장되거나 단축되는 경우 4. 상환기간의 변동없이 계획의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

파주시장 귀하

채권자(주채무자) :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제10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4. 이 자 율 :
5. 상환기간 : 자 지 (년간)
6. 상환제원 :
7. 담 보 :
8. 융자제원 :
9. 기 타 :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자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영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